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체된 금융자산·가상자산에 대한 횡령죄 신설〉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68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6. 24.
3. 회 부 일: 2024. 6.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음(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판결).

그런데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배신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송금인과 사이에 아무런 신뢰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된 금전의 보관관계의 성립에 관해서도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수취인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됨.

또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되는 반면, 유사한 행위태양으로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가상자산이라 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상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하는 내용임(안 제360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60조의2(이체자산 횡령)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가상자산이라 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떤 예금 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예금주가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의 경우 대법원은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음.¹⁾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²⁾³⁾ 가상자산인 비트코인(Bitcoin)이 착오로 피고인의 거래소 가상지갑에 이체되고 피고인이 이를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배임죄⁴⁾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려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는데,⁵⁾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⁶⁾

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3)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5)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판결 등

6)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또한,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인불명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적인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음.

개정안은 이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체된 가상자산이나 금융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처벌하는 “이체자산 횡령죄”를 도입함으로써,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신임관계가 없는 착오 가상자산·금융자산의 이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⁷⁾

7)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결(채권양도인의 채권양도 미통지 후 임의소비 관련) 중 대법관 김선수의 별개의견을 참고하여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임.

※ 다수의견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관 김선수의 별개의견

대법원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하며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소액의 금전을 임의로 사용해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거의 동일한 행위태양으로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즉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심각한 형사처벌의 불균형과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정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형벌법규를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금융자산·가상자산의 착오이체 문제를 종합적으로 입법을 통해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① 가상자산 또는 ② 금융자산이 이체된 경우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가상자산 이체 횡령죄와 금융자산 이체 횡령죄로 구분하여 검토함.

(1) 먼저 가상자산 이체 횡령에 대해 살펴보면, 가상자산은 관련 법률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⁸⁾로 정의되고 있음. 판례는 가상자산을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라 사기죄나 배임죄의 대상인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고,⁹⁾ 형법상 물수의 대상인 재물이 아니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으로 인정한 바 있음.¹⁰⁾

해결하는 것이 정도(正道)로 보인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이어 제347조의2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신설한 것을 참고하여,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이어 제360조의2로 가칭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전자지갑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자’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법정형은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적절하게 상향 조정하면 될 것이다.

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등

10)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따라서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를 감안할 때,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의 성립이 문제되나, 전술한 바와 같이 판례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가상자산을 보존·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려움.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착오송금이 여전히 횡령죄로 처벌되는 것과의 균형을 도모하고, 가상자산의 무단 처분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다만, 개정안의 도입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가상자산이체횡령죄 신설은 최근 10여 년 동안 배임죄나 횡령죄의 성립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흐름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최근 10여 년 동안 배임죄나 횡령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은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니라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배임죄나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해왔는바,¹¹⁾¹²⁾ 판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가상자산의

착오이체에 대해서도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것으로 보임.¹³⁾

별다른 신임관계가 없는 송금인과 수취인 간의 착오송금 후 횡령 문제에 있어 횡령죄를 인정한다면, 논리상으로는 이체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일관적임.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횡령과 다르게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이 나온 이유는, 배임죄나 횡령죄의 성립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는 그간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일방의 믿음만 있는 모든 경우를 횡령죄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형법의 보충성 내지 최후수단성을 고려하여 먼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¹⁴⁾

11)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10여 년 동안 판례의 흐름을 보면, 대법원은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닌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배임죄나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해 왔다. 종전 판례는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수인에게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주지 않은 채 자신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 금전을 수령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최근 판례의 흐름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12)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일반 동산의 매매,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동산의 매매,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 수분양권의 매매 등의 사안에서, 양도인이 권리이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부담하는 권리이전의무는 자기의 사무에 지나지 않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184 판결, 위 대법원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이중담보(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 14340)도 배임죄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금전채권 양도담보설정계약 사안에서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였고(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안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권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음(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참조).

13) 류경은, “디지털자산의 착오이전과 이른바 ‘착오송금 법리’의 적용가능성”, 은행법연구 제16권 제1호, 은행법학회(2023), 105면

14) 착오송금의 횡령죄 성립에 대한 비판을 참조함, 류경은, 전게서, 110면-111면

또한, 기존의 “착오 송금”에 대한 판례도 아무런 계약관계 없는 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을 근거로 보관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전에 대한 착오송금 법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인지도 불투명한 상황임.¹⁵⁾¹⁶⁾

개정안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신임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이체된 가상자산의 횡령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어, 신임관계가 없는 배임죄나 횡령죄의 성립을 배제 또는 축소함으로써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최근 판례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가상자산의 재물성이나 횡령죄의 객체에 대한 해석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상자산에 대하여 판례는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이라 판시한 바 있고, 가상자산의 일반법인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특별히 가상자산의 재물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횡령죄의 객체로 보고 있는바, 형법 제355조의 일반 횡령죄나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횡령의 대상을 ‘재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1) 그동안 판례가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

15) 류경은, 전거서, 110면

16) 참고로,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착오송금이 발생하여 반환이 신청되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인과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양도 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회수절차를 진행하게 됨.

익’이라고 판시한 것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이 ‘재물’로 해석되는 것인지, 2) 아니면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가상자산은 ‘재산상 이익’이라는 성격을 유지하되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는 것인지 등 가상자산의 재물성이나 횡령의 객체에 대한 해석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2) 다음으로 금융자산 이체 횡령죄에 대해 살펴보면, 개정안에서 금융자산은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17)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금융자산”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예탁금·출자금·주식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착오송금 시 신임관계 없는 수취인이 금전을 임의소비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현재 판례가 형성하고 있는 금전에 대한 착오 송금 법리를 폐기하게 되더라도, 개정안이 기존의 착오송금 법리를 대체하여 명문화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횡령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중간 정도로 위치하게 되는바,¹⁸⁾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1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18) 횡령·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

있음.

첫째, 개정안이 입법되더라도 현행의 착오 송금 법리가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만일 유지된다면 기존 횡령·배임죄의 법정형이 더 높기 때문에 개정실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앞서 살펴본 가상자산의 이체 횡령죄 논의와 마찬가지로, 금융자산이체횡령죄는 신임관계가 없는 배임죄나 횡령죄의 성립을 배제 또는 축소함으로써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판례의 흐름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3) 형법에서의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주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가상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주소는 정의하지 않은바, 이는 동 법 제7조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임.¹⁹⁾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의

의 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전자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

“금융자산”이라는 용어를 기술하고 있는바,²⁰⁾ 기본법인 형법에서 다른 법에서 정의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보기 드문 입법형식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02)6788-5053

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이용자가 위탁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3.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2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